

물 류 시 설 의 개 발 및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안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도입(법률 제17232호, '20. 4. 7. 공포, '20. 10. 8.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대상 및 인증기준(안 제13조의5~제13조의6 신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대상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창고’로 하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위한 평가 영역을 기능영역·기반영역으로 구분하며, 첨단화·자동화정도에 따라 인증등급을 차등부여

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안 제13조의7 신설)

법률에서 위임한 인증신청 절차(법 제21조의4제3항 및 제8항)의 세부 사항 규정을 위해 신청인 자격, 신청서류 등 조항 신설

다.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의8~제13조의9 신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법 제21조의4) 및 인증취소(법 제21조의5)에 대한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해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

라.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재심사(안 제13조의10~제13조의12, 제13조의14 신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심사·인증서 발급(법 제21조의4) 절차 수행

을 위해 인증심사단 그룹을 운영하고, 인증 신청을 받는 경우 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며, 이에 대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여부 등이 결정되는 경우 인증서 발급

마.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안 제13조의13 신설)

스마트물류센터 신축·리모델링 전에, 계획단계에서 소유예정자 또는 임차예정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법 제21조의7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5)이 가능하도록 예비인증을 도입하고, 절차 및 효력 등을 구체화

바. 인증기관의 조직·운영 및 지정(안 제13조의15~제13조의17 신설)

심사업무 등 인증제 운영을 총괄하는 인증기관의 지정(법 제21조의4제2항)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고, 전담기구 설치 등 인증기관 자격 신설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법 제21조의6)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

사. 점검·실태조사 및 수수료(안 제13조의18 신설 및 제31조)

인증받은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점검(법 제21조의4제6항) 및 인증유효기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법 제63조)한 인증심사 수수료를 건당 300만원으로 규정

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관련 검증권자 변경 및 검증 의무화(안 제16조의2~제16조의3)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을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일치시킴에 따라, 당초 국토부장관이었던 실수요 검증권자를 국토부장관 및 시·

도지사로 변경하고, 국토부장관에 대한 시·도지사의 실수요검증 요
청조항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을 각각 제13조의19 및 제13조의20으로 하고, 제13조의5부터 제13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적용대상)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법 제2조 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의6(인증기준) ①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위한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능영역 : 입고·보관·분류 등 물류 과정별 성능평가
 2. 기반영역 : 시설의 구조적 성능, 창고관리 시스템 등 총괄평가
- ②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스마트물류센터의 첨단화·자동화 정도에 따라 인증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차등화하여 부여할 수 있다.
- ③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평가영역별 세부항목 및 평가산식, 인증등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제13조의7(인증신청) ①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라 물류창고를 소유한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에 대하여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6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의 인증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2. 물류센터 설계도면
3. 각 분야 설계설명서
4. 설계 변경 확인서
5. 그 밖에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6. 예비인증서 사본(제13조의13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서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

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8(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가. 대학에서 물류 및 건축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

나. 물류 및 건축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다. 물류 및 건축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자

라. 기타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3. 인증기관 소속 전담조직의 책임자로서 심사대행기관을 대표하는 자

④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의9(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의11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

증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심사 내용을 인증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으로부터 인증심사의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10(인증심사단의 구성·운영) ① 인증기관의 장은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50명 이상의 인증심사단 그룹을 구성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3년 이상 교수로서 재직한 물류 및 건축 관련 학과 교수
2. 3년 이상 연구원으로서 재직한 물류 및 건축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물류 및 건축 관련 단체·기업의 부서장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현재 부서장 직위에 있는 자
4. 회계사, 세무사, 물류관리사, 건축기사, 변호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의7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

항의 인증심사단 그룹 중 5명 이내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의11(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의7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의10에 따른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의8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할 것
2.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제13조의12(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의11에 따라 인증신청을 심사한 결과 제13조의6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4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법 제21조4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이 이루어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받은 스마트물류센터는 법 제21조4제4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13(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자 및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이하 “소유예정자 등”이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본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예정자 등이 스마트물류센터의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9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

다.

④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13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소유예정자 등이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증의 유효기간 안에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기재사항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11, 제13조의12, 제13조의14를 준용한다. 다만, 제13조의11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3조의14(재심사 요청) 제13조의11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자 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자 등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15(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① 인증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16(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의 설치 여부, 인증 심사전문인력의 보유여부 및 업무수행체계의 적정성

2. 첨단 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과 관련된 전문성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수행 능력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정관(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한 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8호의1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1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법 제21조의6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3조의18(점검 및 실태조사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인증받은 스마트물류센터가 법 제21조의4제8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증받은 스마트물류센터가 법 제21조4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별표 2의2”를 “별표 2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의3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으로, “물류단지지정권자 및 지정요청자”를 “지정요청자”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표 2의3으로 하고,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1조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신청

별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1건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000원
15,000원
10,000원
3,000,000원

별지 제8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11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기준(제13조의17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의6제1항	지정취소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1조의6제2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의6제3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및 점검업무를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의6제4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의6제5항	지정취소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법 제21조의6제6항	지정취소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Tel	Fax	E-mail
신청대상 물류창고	건축물명			착공(예정)일
	소재지			준공(예정)일
	연면적			용도

인증받은 실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7제2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물류창고의 스마트물류센터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1부 2. 물류센터설계도면 및 각 분야 설계설명서 각 1부 3. 도입설비 및 장비 명세서 1부 4. 물류센터운영매뉴얼(업무/프로세스기술서) 1부 5. 물류정보시스템 기술서 1부 6. 물류센터업무-시스템연계기술서 1부 7. 품질/안전/환경관리매뉴얼 각 1부(필요시) 8. 예비인증서 사본(해당 인증기관 및 다른 인증기관에서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1부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가 저장된 콤팩트디스크 1개	수수료 3백만원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			
등 급			
각 분야별 평가 결과	물류센터 기능영역	점	백 분 을
	물류센터 기반영역	점	%
	합 계	점	
인 증 번 호			
물 류 창 고 명			
소재지 주소			
위 물류창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서 정 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에 따라 ○등급 스마트물류센터로 지정되었기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12제1항에 따 라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 증 기 관 의 장 직인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0일(20일 추가 연장가능)	
신청인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Tel	Fax	E-mail
신청대상 물류창고	건축물명	착공 예정일		
	소재지	준공 예정일		
	연면적	용도		

인증받은 실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13제2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물류창고의 스마트물류센터 자체평가서 및 증명자료 1부 2. 물류센터설계도면 및 각 분야 설계설명서 각 1부 3. 도입예정 설비 및 장비 명세서 1부 4. 물류센터운영매뉴얼(업무/프로세스기술서)(안) 1부 5. 물류정보시스템 도입계획서 1부 6. 물류센터업무-시스템연계계획서 1부 7. 품질/안전/환경관리매뉴얼(안) 각 1부(필요시)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가 저장된 콤팩트디스크 1개	수수료 3백만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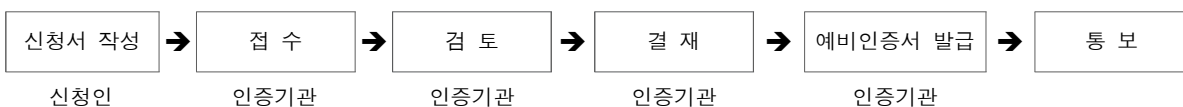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근거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
조의13

- ①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자 및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이하 “소유예정자 등”이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본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예정자 등이 스마트물류센터의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8호의8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9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④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13조의9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소유예정자 등이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증의 유효기간 안에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기재사항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11, 제13조의12, 제13조의14를 준용한다. 다만, 제13조의11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처 리 절 차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

등 급			
각 분야별 평가 결과	물류센터 기능영역	점	백 분 율
	물류센터 기반영역	점	%
	합 계	점	
인 증 번 호			
물 류 창 고 명			
소재지 주소			

위 물류창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서 정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에 따라 ○등급 스마트물류센터로 지정되었기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13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 증 기 관 의 장

직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16제3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정관(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국토교통부	→	검 토 국토교통부	→	결 재 국토교통부	→	지정서 발급 국토교통부	→	통 보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 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16제6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5(적용대상)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법 제2조 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한다.</u>
<u><신 설></u>	<u>제13조의6(인증기준) ①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위한 평가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기능영역 : 입고 · 보관 · 분류 등 물류 과정별 성능평가</u> <u>2. 기반영역 : 시설의 구조적 성능, 창고관리 시스템 등 총괄 평가</u> <u>②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스마트물류센터의 첨단화 · 자동화 정도에 따라 인증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차등화하여 부여할 수 있다.</u> <u>③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평가영역별 세부항목 및 평가산식, 인증등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u>
<u><신 설></u>	<u>제13조의7(인증신청) ① 법 제21</u>

조의4제3항에 따라 물류창고를 소유한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물류창고에 대하여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6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의 인증 자체 평가서 및 증명자료

2. 물류센터 설계도면

3. 각 분야 설계설명서

4. 설계 변경 확인서

5. 그 밖에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6. 예비인증서 사본(제13조의13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경

<신 설>

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서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8(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 설>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

가. 대학에서 물류 및 건축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

나. 물류 및 건축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다. 물류 및 건축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자

라. 기타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3. 인증기관 소속 전담조직의 책임자로서 심사대행기관을 대표하는 자

④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의9(인증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
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의11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단으로
부터 인증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심사 내용을 인증심의위원
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를 거쳐
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와 관
련하여 필요한 경우 인증심사단
으로부터 인증심사의 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
원회의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
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신 설>

제13조의10(인증심사단의 구성·

운영) ① 인증기관의 장은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50명 이상의 인증심사단 그룹을 구성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3년 이상 교수로서 재직한 물류 및 건축 관련 학과 교수

2. 3년 이상 연구원으로서 재직한 물류 및 건축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물류 및 건축 관련 단체·기업의 부서장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현재 부서장 직위에 있는 자

4. 회계사, 세무사, 물류관리사, 건축기사, 변호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의7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인증심사단 그룹 중 5명 이내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인증심사단을 구성하

<신 설>

<신 설>

여야 한다.

제13조의11(인증심사) ① 인증기관
의 장은 제13조의7에 따른 인
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의10에
따른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
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하고, 심사 내용, 심
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
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의8에 따른 인증심의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심
사 결과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와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일
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
성할 것

2.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
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제13조의12(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의11에

따라 인증신청을 심사한 결과 제13조의6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4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법 제21조4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이 이루어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인증받은 스마트물류센터는 법 제21조4제4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한

<신 설>

사항에 대해 인증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13(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자 및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하려는 자 또는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자(이하 “소유예정자 등”이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본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에 앞서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예정자 등이 스마트물류센터의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8호의8 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9서식의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13조의7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예비인증을 받은 소유예정자 등이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증의 유효기간 안에 예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기재사항에 맞게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신 설>

<신 설>

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11, 제13조의12, 제13조의14를 준용한다. 다만, 제13조의11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3조의14(재심사 요청) 제13조의11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자 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자 등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15(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① 인증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신 설>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16(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1조의 4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의 설치 여부, 인증 심사전문 인력의 보유여부 및 업무수행 체계의 적정성
2. 첨단 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 시스템과 관련된 전문성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수행능력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는 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구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
서

2.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
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
정

4.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과 관련
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정관(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
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신 설>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한 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8호의1서식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1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법 제21조의6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 설>

제13조의5 · 제13조의6 (생략)

제13조의18(점검 및 실태조사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정기점검 이외에도 인증받은 스마트물류센터가 법 제21조의4제8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증받은 스마트물류센터가 법 제21조4 제8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19 · 제13조의20 (현행 제13조의5 및 제13조의6과 같음)

제16조의2(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일반물류단지에 대하여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이하 “실수요 검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일반물류
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
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 한
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수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서류

④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1

제16조의2(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
----- 별표 2의3-----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

-----.

1. ~ 5. (현행과 같음)

6. -----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가 -----

<삭 제>

항 단서에 따른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일반물류단지의 실수요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요청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일반물류단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수요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7 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

<삭 제>

<삭 제>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전에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 <단서 삭제>
제16조의3(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제7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u>물류단지 지정권자 및 지정요청자에게</u>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별표 2의2 제2호나목에 따라 일반물류단지 실수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알려야 한다.	제16조의3(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 ---- <u>지정요청자</u>----- ----- ---. ----- ----- ----- ----- -----.